

# 2020년도 제152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7. 28.(화), 15:00 ~ 18: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16명
  - 심의위원: 박성호 위원장, 권현영 위원, 김경숙 위원, 김연희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백대용 위원, 신창환 위원, 심장섭 위원, 오영주 위원, 위정현 위원, 윤종수 위원, 이성엽 위원, 최승수 위원, 최현용 위원, 홍지만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위원장
2. 전차(제2020-93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심의위원
3. 안건상정 .....	위원장
<b>&lt;보고안건&gt;</b>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정현순 전문위원	
· 2020년도 상반기 심의 현황 및 주요 심의 사항	
<b>&lt;의결안건&gt;</b>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 권고 심의	
· 제2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계정정지 시정권고 심의	
<b>&lt;논의안건&gt;</b>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구글 앱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바일 앱의 저작권 침해 여부	
4. 폐회선언 .....	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보고안건

#### ○ 2020년도 상반기 심의 현황 및 주요 심의 사항

##### - 주요내용

- 2020년 상반기 개최 및 유형별 심의 현황 보고
- 2020년 상반기 전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주요 심의 사항 보고

### 2. 의결안건

####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 주요내용

- 안건번호 제2020-80826호~80921호(순번 1번~96번)는 제3분과위원회(2020. 6. 25. 개최, 제2020-118회 회의)가 전체위원회에 부의한 안건으로, 네이버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음원을 무료로 제공한 사안임.
- 안건번호 제2020-80922호(순번 97번)는 제2분과위원회(2020. 7. 1. 개최, 제2020-124회 회의)가 전체위원회에 부의한 안건으로, 배타적 발행권자(민원인)가 웹하드 사이트의 일본 성인용 영상물(AV)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요청한 사안임.
- 안건번호 제2020-80923호~80969호(순번 98번~144번)는 제3분과위원회(2020. 7. 9. 개최 제2020-134회 및 2020. 7. 15. 개최 제2020-141회 회의) 및 제1분과위원회(2020. 7. 13. 개최 제2020-135회 및

2020. 7. 20. 개최 제2020-143회 회의)가 전체위원회에 부의한 안건으로,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국내 서버에 저장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direct link)를 제공한 사안임.

- 안건번호 제2020-80970호(순번 145번)는 제3분과위원회(2020. 7. 9. 개최, 제2020-134회 회의)가 전체위원회에 부의한 안건으로, 직접 링크(direct link)로 연결되는 ‘카카오TV’에서 불법복제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 - 회의결과

- 안건번호 제2020-80826호~80921호(순번 1번~96번)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오프닝곡과 엔딩곡의 음원을 블로그에 올린 사안임. 권리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 시정권고 제도가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는 점, 해당 블로그에 광고가 게재되지 않아 영리활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결함.
- 안건번호 제2020-80922호(순번 97번)는 배타적발행권을 부여받은 회사에서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요청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영상물 등급 위원회로부터 등급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해당 저작물이 합법 시장에서 유통되는지에 대해 민원인이 확인해주지 않은 점, 민원인이 충분히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온라인상 유통되는 저작물과 배타적발행권 등록의 대상이 된 저작물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시정권고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결함.
- 안건번호 제2020-80923호~80969호(순번 98번~144번)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카카오TV에 저장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direct link)를 제공한 사안임. 서버에 저장된 불법복제물을 제거하면 해당 링

크를 더 이상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국내 서버에 저장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 게시물에 대해 시정 조치를 권고하기보다 불법복제물 자체에 대해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효과적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결함.

- 안전번호 제2020-80970호(순번 145번)는 영상 저작물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

#### ○ 제2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계정정지 시정권고 심의

##### - 주요내용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해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122개 계정에 대해 27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1개월의 계정 정지 시정 조치를 권고함

##### - 회의결과

- 계정정지 시정권고 안전번호 제2020-79호~제2020-122호는 중복 청구되었으므로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0-1호~제2020-78호는 복제·전송자가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하였으므로 복제·전송자의 상습성, 복제·전송한 양, 게시한 불법복제물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저작물등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1개월의 계정정지 시정권고 가결함

### 3. 논의안건

#### ○ 구글 앱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바일 앱의 저작권 침해 여부

##### - 주요내용

- 리치앱은 상당한 불법 음원 정보를 제공하면서, 필터링 기능을 포함한 기술적 조치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불법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리치앱이 검색 결과로 제공하는 음원 정보의 원천에 대한 불법성 판단 후에 리치앱에 대한 불법성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박성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152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0-93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성호 위원장: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발언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15페이지, 19페이지, 29페이지에 자구 수정 의견을 주셨음. 2페이지, 3페이지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명, 7페이지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명, 게시물 제목, 게시글, 11페이지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명, 검색어, 12페이지의 검색 결과 내용, 온라인서비스제공자, 14페이지, 15페이지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해야할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취소선으로 표시한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임.
- 참석 위원 전원: 이견 없음.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박성호 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명, 게시물 제목, 게시글, 검색 결과 내용

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 3. 보고안건

- 박성호 위원장: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정현순 전문위원: (2020년도 상반기 심의 현황 및 주요 심의 사항을 보고함)

### 4. 의결안건

####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 목록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을 제시하면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제척 사유 해당 사항이 없음
- 박성호 위원장: 전문위원회에서는 검토보고를 요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45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로, 안건번호는 제2020-80826호~80970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같음하겠음.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80826호~80921호는 실





에 회부한 배경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B 위원: 본 사건은 법적으로 저작물이 불법적인 형태로 전송되고 있는 것은 명백함. 하지만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산업은 마케팅의 일환으로 오프닝곡과 엔딩곡을 무료로 공개하고 있음. 물론 일본의 애니메이션 산업은 음원을 별도로 판매하고 있음. 우리나라와 일본의 산업 마케팅 방식의 차이점임. 일본의 산업 관행은 별론으로 하고 오프닝곡과 엔딩곡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애니메이션 본편 홍보를 위한 국내 마케팅 관행임. 즉 본편을 볼 수 있게 하는 마케팅 효과가 발생하므로 OST 음원 파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음. 해당 수입사나 배타적발행권자들이 해당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해당 블로그에는 심의대상 게시물 96건 이외에도 유사한 다른 게시물들이 있는데, 다른 게시물에도 시정권고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해당 블로그는 다른 블로그와 달리 상업 광고가 게재되어 있지 않고 영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대상 게시물을 시정권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임.

- 박성호 위원장: 3분과심의위원회의 다른 위원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 C 위원: 먼저 B 위원님께 질문이 있음. B 위원님께서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산업은 마케팅의 일환으로 오프닝곡과 엔딩곡을 무료로 공개한다”라고 발언해주셨는데, 무료로 제공시 한곡 전체 분량으로 공개하는지? “해당 수입사나 배타적발행권자들이 해당 문제에 대해

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해 주셨는데, 본 안전과 같은 게시물에 대해서 일본 측의 관리자가 삭제 요청을 한 적이 있는지?

- B 위원: 관리자의 신고 여부는 보호원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 성원영 전문위원: 본 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관리자 측에서 신고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B 위원: 유튜브에서 동일 곡명을 검색해 보면, 전부 무료로 공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C 위원: 유튜브의 경우 Content ID 정책에 따라 저작권자등에게 수익이 배분됨.
- B 위원: 관리자가 직접 광고를 게시하는 것임.
- A 위원: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우 마케팅 차원에서 오프닝 곡, 엔딩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우 마케팅 차원에서 무료로 오프닝곡, 엔딩곡을 제공한다는 관련 소명 자료가 있는지?
- B 위원: 검토보고서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본 애니메이션산업의 경우 무료 마케팅이 아니라 유료 마케팅을 하고 있음. 일본 아마존 사이트에서도 분명히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맞음.



- C 위원: 2006년 OP,ED 게시판부터 게시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연도별 OP,ED 게시판 목록을 제시하면서)2006년, 2007년 OP,ED 게시판에서는 각각 2개의 게시물, 2008년 OP,ED 게시판에서는 총 8개의 게시물, 2009년 OP,ED 게시판에서는 총 10개의 게시물이 있음. 모두 MP3 파일이 게시되어 있음.
- A 위원: 블로그의 게시물을 확인한 결과 블로거가 일본 애니메이션의 오프닝곡, 엔딩곡에 대해서 일정한 '덕후' 수준에 오른 분 같음.
- F 위원: 블로거에 대한 시정권고 이력 조회 가능한지?
- 성원영 전문위원: 해당 게시자에 대한 과거 시정권고 이력 확인 가능한지 검색해 보겠음.
- F 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블로그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음.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음. B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러한 것을 문제 삼기 시작한다면 심의 대상 블로그에 있는 게시물 모두 삭제조치 해야 함. 유료 광고를 통해서 영리활동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게시된 게시물을 확인한 결과 해당 블로거는 일본 애니메이션 오프닝곡, 엔딩곡의 덕후라고 여겨 짐. 일본 애니메이션을 알리고 싶고 소개해 주고 싶은 차원에서 게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함. 오프닝곡, 엔딩곡이 판매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 애니메이션 영상을 게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정도라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

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함.

- 성원영 전문위원: 게시자에 대한 과거 시정권고 이력 확인 결과 2020년에 56회 시정권고 조치됨.
- B 위원: 비슷한 시기에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권고한 것으로 생각됨.
- F 위원: 동일한 민원인이 신고해서 시정조치를 권고한 것으로 보임.
- C 위원: 이러한 블로그에 대해서는 저 역시 우호적인 입장임. 블로그에 불법복제물 게시를 방지할 경우 관리자 입장에서는 보호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관리자가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시하게 되면 오히려 이용자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함. 특히 이용자가 저작권법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음. 본 안건과 같은 경우 경고의 시정권고 조치를 취한다면 이용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유리한 부분도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함.
- G 위원: 저도 F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임. 관리자의 신고 여부, 최신 저작물 여부, 애니메이션의 영상이 아닌 오프닝곡과 엔딩곡을 알려 애니메이션 영상을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 박성호 위원장: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행정조치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관리자와 이용자의 대면구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님. 권리자의 의사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아님. 그러한 의미에서 시정조치를 권고 할 때 마다 권리자의 의사를 확인 것 자체가 시정권고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 그러한 점에서 모니터링을 하거나 민원인의 신고에 의해서 불법복제전송이 확인 되었을 때,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는 불법 정보라고 판단되면 그것이 1단계가 될 것임. 이러한 불법 정보가 경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권리자에게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을 발생했는지 2단계까지 고려를 해서 시정권고 여부를 판단해야 함. 심의대상 게시물의 음원이 유료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았다는 소명자료가 확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권고하기 위해 요구되는 2단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생각함. 이 외에 본 안건에 대해서 특별히 고려해야할 다른 요소가 있는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야함.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시 바람.

- H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불법성이 확인이 되었고, 시정권고 요건을 갖추었다면 당연히 시정권고 해야 한다고 생각함. 기존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면 원칙대로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다보면 시정권고 제도의 본래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됨.
- F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서 불법성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임.
- I 위원: 우리가 권리자 의사를 생각해 본다는 건 결국 이 부분에 대한

목시적 이용 허락이 있을 수 있음. 또한 이 제도 자체의 역할이 예외적인 구조에서 만들어진 만큼, 확실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나서서 처리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할 여지가 있음. 시정권고 제도는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 구제 제도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는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임. 심의대상 블로그는 애니메이션의 모든 곡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오프닝곡과 엔딩곡만 게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블로거가 오타쿠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으로 생각됨. 기본적인 입장은 이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봤을 때 권리자 요청 없이 제3자의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함.

- J 위원: 2006년, 2007년, 2008년 OP,ED 게시판 내 게시물 생성 일자를 확인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2006년, 2007년 OP,ED 게시판에 각각 2개의 게시물이 있으며, 모두 2020. 6. 8.에 업로드 되었음. 2008년 OP,ED 게시판에서는 총 8개의 게시물이 있으며, 이중 6개의 게시물은 2020. 6. 8., 2개의 게시물은 2020. 6. 21에 업로드 되었음. 2009년 OP,ED 게시판에서는 총 10개의 게시물이 있으며, 이중 8개의 게시물은 2020. 6. 8., 2개의 게시물은 2020. 6. 21에 업로드 되었음. 최근에 저작물을 다량으로 게시한 것임.
- A 위원: 현재 애니메이션의 오프닝곡과 엔딩곡은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음. 음원이 판매 수익이 가수들에게도 배분 될 것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산업과 일본 애니메이션산업의 여건이 다르다고 생각됨. 일반 공중 누구나가 블로그에 접속하여 음원

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임.

- D 위원: 만약 블로거가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덕후여서 멜론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오프닝곡, 엔딩곡을 블로그에 다량으로 업로드한다면 우리나라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할 것임.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애니메이션의 오프닝곡, 엔딩곡이 마케팅의 일환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관행이 있지만 멜론, 유튜브 등에서 직·간접적인 수익을 얻는 저작권자가 있는 상황에서 심의위원회가 블로거가 덕후 수준에 머무른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음.
- I 위원: 음원을 유료로 판매하는 것과 저작권자가 음원에 대해 강력한 저작권을 주장하겠다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함. 가령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 표시되어 오픈된 곡도 유료 사이트에 올라가 있음. 일반 사람들이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곡도 기본적으로 유료 사이트에 올라가는 것은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음. 우리 심의위원회가 아마존 사이트와 같은 유료 사이트에서 음원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여 그 음원에 대해서 저작권자가 항상 유료로 제공하는 것에만 허락했다고 말할 수 없음.
- K 위원: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는 한국, 중국, 일본 애니메이션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일본 저작권자들은 일본 애니메이션이 한국이 수출되었다거나 심의대상 게시물과 같이 블로그에 이용 허락 없이 업로드 되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음. 현재 한일, 한중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본 저작권자들이 한국이나 중국에 대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조금 전 제가 심의대상 게시물의 일본어 버전 음원을 유튜브에서 검



색해 보았는데, 업로드된 음원의 분량이 모두 상이함. 일반적으로 일본에서는 음원이 유료사이트에서의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활용하거나 사이트에 게시하면 모두 불법으로 간주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저작물들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함. 우리나라가 저작권 관련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해야할지 신중히 고민해봐야 함.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의 음원 제공 형태와 법률 제도로 볼 때, 해당 블로거의 마니아적인 활동을 어느 정도 이해해줄 수 있겠지만 다수의 음원을 업로드 하였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L 위원: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보호원의 설립 목적과 기능이 상실한다고 생각됨.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권고하지 않는다면, 일반인으로부터 민원을 받지 말아야 하며 저작권자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기존의 심의안건과 동일하게 시정조치를 권고해야 한다고 생각함.
- F 위원: 저는 다른 입장임. L 위원님의 말씀대로라면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이해관계, 의사만 대변한다면 이용자 입장을 대변하는 제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이유가 없음.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법이긴 하지만 그 법이 예외 없이 적용되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삭막함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이용자를 대신하여 저를 불러주신 것 같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법률적인 이야기는 아닐 수 있지만, 이용자가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가

차 없이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에서 조금만 더 유연성을 갖고 바라봐 주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 I 위원: 보호원의 역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 조치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권리자, 침해자 모두의 이야기를 듣지 못함. 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 게시물을 심의하여 제3자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전송중단 또는 삭제시키라고 권고함. 그렇기 때문에 시정권고 제도는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따지는 제도하고는 전혀 다른 제도임.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봄.
- L 위원: 이용자의 권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10년 전만해도 음원, 영화 등을 무상으로 다운로드하여 감상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래하 한글’ 같은 경우에도 이찬진 씨가 만들 때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만듦. 10년 전에는 가능했던 일임. 제 주변에서는 한 달에 한번 돈을 지불하고 영화를 다운로드함. 이용자가 돈을 지불하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유는 법이 있기 때문임. 다른 이용자가 무료로 저작물을 이용하면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남. 돈을 지불하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함.
- E 위원: 동일한 엔딩 크레딧을 올린 것에 대해서 개별 블로그의 인지도나 규모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음. 이러한 덕후들이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볼 때, 덕후들에게는 엔딩 크레딧도 돈 주고 살 만큼 중요한 콘텐츠로 보임. 아마존 사이트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음원을 다운로드하여 국내에서 이용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덕후들이 해당 블로그에 약 2,200명이 모여 있고,

이 분들이 해당 블로그에서 무료로 음원을 다운받아 합법 시장을 침해한다면 시정조치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C 위원: 제도적인 측면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전에 제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에 교육을 담당한 경험이 있음. 그 당시 교육생들은 저작권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음. 시정권고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저작권자가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보다는 보호원에서 행정조치하는 것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보임. 그러한 측면에서 저작권자, 이용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함.

- A 위원: 조금 전에 F 위원님의 발언 중에 이용자 측의 권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은 시정권고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임. 어떠한 경우에 이용자 입장을 잘 고려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해당 블로그 운영자가 일본 애니메이션 오프닝곡, 엔딩곡을 복제하여 전송시킨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연주를 하거나 개사를 할 경우, 이른바 2차 사용이 이루어질 때 이용자의 권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함. 본 안전처럼 단순 불법복제물을 올리는 사안까지 이용자의 권익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지 생각해야함.

- F 위원: 해당 블로그 공지사항의 공지 및 감사인사 게시물에 접속하여 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해당 게시판을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게시물에는  
“◆◆◆◆◆◆ ◆◆◆◆◆◆ ◆◆◆◆◆◆ ◆◆◆◆◆◆ ◆◆◆◆◆◆ ◆◆◆◆◆◆ ◆◆◆◆◆◆ ◆◆◆◆◆◆

◆ ◆◆◆ ◆◆ ◆◆◆ ◆◆ ◆◆◆◆◆”라는 내용을 게시함. 블로거는 불법복제물을 계속 업로드하겠다고 공지한 것으로 보임.

- 박성호 위원장: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권리자 관점, 이용자 관점에서 많은 의견을 주었음. 혹시 위원님들 중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 M 위원: 해당 안전에 대해 3분과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은 OST 음원 파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가 본편을 볼 수 있게 하는 마케팅 효과가 발생하므로 권리자도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음. 노이즈 마케팅도 하나의 홍보 수단이 된다고 봄.
- K 위원: 권리자들이 그럴 의사가 있는가가 중요함. 우리가 중국 애니메이션 시장을 대하는 관점이 필요함
- B 위원: 산업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기본적으로 산업적 베이스에서 산업적 로스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함.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상대방 산업적 시스템 속에서 매출이 얼마정도 기대될 것이냐에 대한 자기들의 계획이 있음. 그 계획 하에서 국내에서 엔딩곡, 오프닝곡에 대한 매출과, 혹은 저런 노이즈 마케팅으로 발생하는 본편에 대한 기대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서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업계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닌가 싶음.
- 박성호 위원장: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함. 해당 안전은 자유롭게 표결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표결함)
- 박성호 위원장: 안전번호 제2020-80826호~8092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함.(가결: H 위원, C 위원, A 위원, N 위원, O 위원, E 위원, P 위원, K 위원, D 위원, L 위원 / 부결: M 위원, G 위원, J 위원, F 위원, I 위원, B 위원)
- L 위원: 만약 다른 민원인이 유사한 민원을 신고 할 경우, 3분과위원회가 아닌 다른 분과위원회로 동일한 사건이 심의되어 가결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 안전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선례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서 판단하시면 됨.
- 정현순 사무처장: 관례상 전체위원회와 다른 결론을 분과위원회에서 내리게 되면 전체위원회에 해당 안전을 상정하였음.
- 박성호 위원장 : 해당 안전과 동일 안전 심의를 위해서 일정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함.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고 블로그의 성격이 일반 애니메이션 덕후 성향에 해당하고, 광고가 게재되어 있지 않는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 안전에 대해서만 앞으로 부결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함.
- 박성호 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80922호는 일본에서 ■■■■ ■■ 공표된 성인용 영상물 (Adult Video)임. “▼▼▼▼ ▼▼▼ ▼▼▼ ▼▼▼▼ ▼▼▼ ▼▼▼ ▼▼▼▼▼”에 관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 받은 ‘▶▶▶▶▶▶▶’이 신고한 사안으로, 민원인 회사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본 건 영상물이 무단으로 복제·전송되고 있으니 보호를 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였음. (민원인 회사가 제출한 배타적발행권설정 등록증을 보여주면서)민원인 회사가 제출한 배타적발행권 설정 등록증을 보면 저작물의 제호는 “▼▼▼▼ ▼▼▼ ▼▼▼ ▼▼▼▼ ▼▼▼ ▼▼▼▼▼▼▼▼▼▼” 저작물의 종류는 영상저작물임. 등록권리자는 민원인과 동일인인 ‘▲▲▲ ▲ ▲▲▲▲▲▲▲’이고, 등록의무자는 일본 ‘□□□□ □□’임. 등록연월일은 2015. 2. 9.이며, 같은 달 10.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었음. (민원인 회사가 제출한 배타적발행권설정 계약서를 보여주면서)민원인 회사가 저작재산권자인 일본 회사 ‘□□□□ □□’와 사이에 체결한 2013. 3. 31.자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서와 부속계약서임.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은 계약서 제4조제1항에서 “위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은 계약일로부터 4년간 존속한다. 다만 위 저작물 외의 추가 저작물에 대한 존속기간은 설정일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날인까지 모두 되어있는 서류를 제출하였음.
- 민원인은 현재 본 건 영상물 1건에 대해서만 보호요청을 하였으나, 민원인 회사가 다수의 일본 성인용 영상물에 대해 배타적발행권을 확보하고 있고, 금번 민원은 실험적으로 1건에 대해서만 신고를 한 것이라고 밝혀 향후 비슷한 안건이 심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음.
- 민원인은 웹하드에서 제공되는 불법복제물이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소명하기 위하여 샘플 영상물을 제출하였는데, 본 건 영상물이 아닌 다른 영상물(☆☆☆☆☆☆)을 제출하였음. 이 샘플 영상물의 일

본에서 유통 중인 성인용 영상물 원본파일은 약 1시간 58분 57초 분량이고, 해당 영상물을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유통하기 위해 성기노출 부분 등을 삭제, 편집한 국내용 버전의 영상물은 약 45분 4초 분량임. 어떤 방식으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지 보여주기 위하여 제출한 것임.

(민원인이 제출한 국내용 버전의 영상물을 보여주면서)성인용 영상물의 합법시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시겠음. “이 비디오물은 19세 이상 관람가 등급으로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있음. 앞부분은 주로 일반적인 드라마 같은 내용임.

- A 위원: 지금 보는 영상물이 안전번호 제2020-80922호 영상물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아님. 지금 보시는 영상물은 합법시장에서 어떻게 유통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민원인이 제출한 샘플 영상물임.
- A 위원: 해당 건이 아닌 샘플 영상물을 제출한 것에 대한 의문이 남음. 콘텐츠의 음란한 정도가 가장 낮은 것을 선택해서 샘플 영상을 제출한 것은 아닌가 생각됨.
- 성원영 전문위원: (일본 유통용 샘플 영상물을 보여주면서)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영상물을 보시겠음. 국내용 버전과 분량의 차이가 상당함. 1시간 58분 분량임.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버전도 성기부분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음.  
(민원인 회사가 제출한 공문을 보여주면서)민원인 회사는 “★☆☆☆  
☆☆ ★☆☆☆☆ ★☆☆ ★☆☆☆☆☆☆ ★”이라는 제목의 공문과 함께

법률의견서를 보냈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고 주장함.

최근 법원의 판결을 보면, 먼저 대법원 형사판결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위 열거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지 아니하면서도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80년도 대법원 민사판결 입장을 형사판결에서도 재확인하였다고 이해되고 있음.

또한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일본 성인용 영상물 저작권자 등이 웹하드 운영사를 상대로 영상물 복제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일본 성인용 영상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

본 건 영상물은 스너프 필름이나 아동 포르노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것으로 보이고, 본 건 영상물의 단순 복제물(dead copy)을 무단 제공하는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재산권침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우리 심의위원회는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한 다음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내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음(이른바 '2단계 테스트'). 즉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당연히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일본 성인용 영상물은 해당 콘텐츠의 합법 시장의 수요를 대체한다고 볼 수 있음. 혹은 배타적발행권자 등 국내 배급사업자들의 사업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잠재적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

다만 민원인은 본 건 영상이 아닌 다른 영상을 제출하였고, 본 건 영상의 국내용 버전이나 국내 유통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보호원 직원의 전화요청에 응하지 않았음.

- A 위원: 본 건은 제2분과위원회에서 전체위원회에 상정하였음. 서울고등법원 판시에서 “이 사건 영상물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에게 이 사건 영상의 유통을 금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소극적 침해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저작물의 유통을 금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소극적 침해금지청구권까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힌 부분을 보면, 음란한 내용이 들어간 콘텐츠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적극적인 권리추구권까지는 인정해주기 어렵지만, 소극적인 권리 침해금지청구권까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 입각해서 이 사건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것을 알 수 있음.

저는 시정조치 권고 제도란 피해 확산도 막고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는 것도 막는 제도로서, 그 성격이 침해금지청구권으로서의 기능과 손해배상청구권 기능이 함께 모아져 있는 제도라고 이해를 하고 있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음란물이거나 또는 음란물로서의 성격이 농후

한 콘텐츠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권고라는 행정력을 동원해가면서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하여 전체위원회에 상정하게 됨.

- B 위원: 배타적계약서에 해당 저작물에 대한 목록이 제출이 되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제출되지 않음.
- B 위원: 신고인이 이 저작물에 대해서 정당한 배타적발행권을 설정 받은 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N 위원: 아까 제시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배타적발행권설정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해당 등록증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행한 것으로, 저작권위원회에서 계약서 등을 통해 배타적발행권 설정 받은 자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등록을 해줬을 것이라고 생각함.
- A 위원: 정당한 권리자임이 소명된 것을 전제로 하여 논의를 하면 될 것임.
- G 위원: 저는 부결 의견임.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확산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생각함. 시정권고 제도는 행정조치인데, 그런 내용에까지 조력해야하는지 의문임. 여성 이용자의 입장에서 반감이 있음.

- A 위원: 민원인이 법원을 통해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시정 권고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신고한 것으로 보임.
- C 위원: 처음에 보여주셨던 영상 자료처럼 음란성이 낮은 상태로 제출을 한다면, 음란성의 정도에 따라 음란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음란한 장면이 약간 존재하는 영화로 보아야 할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음.
- F 위원: 저도 똑같은 혼란이 있음. 우리가 논의해야 할 대상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영상물이 아닌 것 같은데, 맞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사실 국내 합법 시장이 확인되지 않음. 보호원에서 민원인에게 국내 합법 시장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로 자료를 요청했으나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더 이상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 보호원에서 합법 시장에 대한 자료 외에도 여러 종류의 자료를 요청해서 민원인이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생각함.
- F 위원: 웹하드에는 국내용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일본의 원본 영상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 성원영 전문위원: 그러함.
- D 위원: 보호원이 일본 AV를 일일이 다 모니터링하며 음란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임. 판례에 따르면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저작물성은 인정이 되고 소극적인 침해금지청구권이 인정

된다고는 하더라도 다른 특별법에서의 지위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특히 국가의 재원을 가지고 일본의 음란물까지 보호하고 있다는 비  
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 그런 측면에서 정책적인 판단 하에 신중하  
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임.

일본의 음란물이 시급하게 보호해야 할 콘텐츠인가 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행정력을 투입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됨.

- O 위원: 신고인이 민원제기를 하면 처리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4일 이내임.

- O 위원: 행정력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이 있어  
야 한다고 생각함. 예를 들면 상영 중인 영화나, 최근에 발매된 음악  
처럼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임.

또한 민원인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신고한 건에 대해  
서는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임. 다만 보호요청  
이 무한정으로 몰려오면 기한 내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 우려됨.

- F 위원: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  
인 부분을 해하고 도저히 사회 일반에서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음  
란물일 경우에는 저작물성을 부인하거나 저작권법에 따른 금지청구  
권 행사를 제한하여야 봄이 상당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에 만약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저작물성이 부인되지 않을 정도의  
작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고 해야 할 것임. 우리는 음란  
물을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소명되지 않  
을 경우 관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E 위원: 저작물이 윤리적이냐 아니냐는 차치하고, 시대의 흐름이 음란물에 대해서도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추세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정 권고를 하는 모든 여건을 충족하였을 때 무슨 논거로 거절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임. 일본 성인용 영상물이기 때문에 조력하기 어려운 점,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점도 물론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요소이긴 하지만 시정권고 요건에 맞는 안전이 나온다면 시정권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임.

합법시장이 존재하며 국내에 유통하는 비디오와 차이나지 않는 대체 가능한 정도의 영상물임을 소명하고, 저작물성이 부인될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만 입증한다면 국민들에게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반사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일본 AV나 미국 포르노 등에 대해 시정권고 심의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요건에 맞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함.

다만 본 안전에 대해서는 합법시장이 형성되어 있는지는 의문임. 또한 일본 원본 영상물과 국내용 영상물이 동일한 것인지,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임.

- B 위원: F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함. IPTV나 케이블TV의 성인채널은 국가별로 채널 구분을 해서 영상물이 유통될 정도로 시장 규모가 큼. 그런 의미에서 편집되기 전의 원 저작물이 그 시장의 규모에 영향을 끼치는 효과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비디오물은 연간 1만 여 건이고,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방송물자체등급분류받은 영상물도 몇 만 건이나 되는데, 이 모든 건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면 음란물에 대해 적극적인 손해배상조치를 해주는 역효과

가 발생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부결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임.

- H 위원: 원칙적으로 음란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해야 한다는 E 위원님 의견에 찬성함.
- J 위원: 배타적발행권설정 등록증에 해당 저작물 러닝 타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다면 웹하드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물과 같은 영상물이라는 것을 알 수 없는 것 아닌지?
- A 위원: 그러함.
- J 위원: 그렇다면 합법적인 저작물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는 상황이 아닌지? 웹하드 사이트에 올라온 것은 그 자체가 불법임.
- E 위원: 유통은 금지되지만 저작물성은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됨.
- J 위원: 정확한 권리자는 아닌 것으로 보임.
- A 위원: 같은 콘텐츠를 두고 일본에서는 합법적인 성인물이라고 보지만, 우리 법 영역으로 넘어오면 형법상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농후함. 음란물에 해당하는 이 콘텐츠에 대해 행정력을 동원해가면 서까지 시정조치 제도로 구제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H 위원: 아주 명백하게 보자마자 음란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

나라고 한다면, 우리는 음란물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저작물성 판단만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 F 위원: 국내 합법시장에서 유통되는 저작물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그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함. 그러나 일반적인 모니터링 건이라든지, 국내 합법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음란성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H 위원: 필요하다면 관련 사안은 음란물을 다루는 기관에 이첩할 수는 있을 것임. 법상 우리의 시정조치는 음란성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없어, 단순하게 저작물성만 판단하면 될 것 같음.
- A 위원: 음란물성 판단은 제외하고서라도 본 사안은 저작권 침해는 발생했지만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혀 소명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음. 그런 점에서 여태까지 시정권고 제도를 운영해온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사안임.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혀 소명을 하지 않았음.
- K 위원: 저작물성에 대해 심플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함. 본 사안이 음란물이라고는 하지만 제목만 자극적일 수 있음. 국내용 버전은 그조차도 일본에서 유통되는 것보다 편집이 되었음. 영화계에서 호평을 받았고,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작품 '색, 계'에서는 하반신의 체모나 남성의 성기도 노출이 되었음. 그 영화보다 노출 수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됨.

- A 위원: 우리가 확인한 영상물은 원 저작물에서 1시간 정도를 잘라낸 국내용인데, 그러한 점에서 미루어 보아 원 저작물 그대로 우리나라에 넘어오면 형법상 음란물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농후한 것 같음. 우리가 지금 논의 대상으로 삼는 복제·전송물은 일본 원 저작물임.
- J 위원: 일본의 원 저작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과 못한 것이라면 미국의 XXX Movie가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 D 위원: 그런 영상은 저작물성이 없음. 스너프 필름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영상물은 아예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음.
- J 위원: 그렇게 보면 일본 성인용 영상물도 저작물성이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은지?
- D 위원: 일본에서 AV는 합법일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그대로 넘어왔을 때에는 저작물성이 없으면서 음란물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저작물성도 인정되고 음란물도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저작물성은 인정되지만 음란물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일본에서 넘어온 영상물이 일본에서는 합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넘어왔을 때는 음란물인 영상물도 꽤 있을 것임.  
그런데 음란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임. 같은 영상물을 가지고 음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견해가 다를 수 있음. 성인용 영상물은 저작물성도 있지만 음란물이라는 특성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법원이 아닌 이런 행정기관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함.



- J 위원: 저작권보호원 입장에서 합법적인 경우에는 시정권고를 가결 해주지만, 음란성과 관련하여 아직 판단 유보된 상황이라면 저작물성에 대해서도 판단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지? 웹하드에 게시된 영상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원한다면 해당 저작물이 음란물이 아니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임.
- K 위원: 저작권위원회에서는 배타적발행권을 등록을 해주었음.
- B 위원: 발행 대상이 원본저작물인지 수정저작물인지 확인이 안 됨.
- I 위원: 법에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에는 제5항 “저작권자가 저작물 보호에 관한 요청을 하는 등 보호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제7항 “사회적·국제적인 환경 등에 따른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제8항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시정권고 심의를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기준이 있음.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의 문제제기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함.  
 시정권고 제도의 성질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에 대해 위원님들간 논의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음. 우리 제도는 보통의 조치, 소송으로 가기 전에 구제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탄력 있게 적용해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임.
- N 위원: 국내에 공식 배포된 영상물의 존재를 물어봤지만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하지는 않았다는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민원인과 직접 통화한 보호원의 온라인대응팀 직원이 마침 이 자리에 배석해 있음.
- 온라인대응팀 Q 주임: 제출할 자료들은 충분히 제출하였고 더 이상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하였음.
- F 위원: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영상물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안 해줬다는 의미인지?
- 온라인대응팀 Q 주임: 그러함.
- N 위원: 국내에서 유통되는 저작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된 상황인 것으로 이해됨.
- L 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영상물인지?
- E 위원: 설령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분량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
- A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소명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았음. 이에 비추어 봤을 때 온라인상 유통되는 것과 배타적발행권 등록의 대상이 된 것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음.
- E 위원: 일본 성인용 영상물을 다루는 우리의 시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부결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나, 이 건에 한해서는 합법시

장에 대한 소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부결 의견임.

- P 위원: 그렇다면 합법 시장을 확인한 후에 다시 심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잠재적 합법시장도 합법시장에 포함될 것임. 잠재적 합법시장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불법복제물이 시장 수요를 대체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편집·삭제되지 않은 일본 버전의 불법 유통 영상물은 100포인트에 이용가능하고 편집·삭제되지 않은 국내용 합법 콘텐츠는 5천원 내지 7천원에 이용가능하다고 했을 때 이용자는 낮은 가격의 불법복제물을 이용하게 될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복제물은 시장의 수요를 대체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거나 독점·배타적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 입장에서는 시장 진출을 못하게 되거나 매물비용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함.
  
- E 위원: 잠재적 시장이라는 부분도 음란성이라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야 형성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데드카피의 잠재적 시장을 논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음. 원본 저작물 대신에 삭제, 편집된 수정본을 보지는 않을 것 같음.
  
- K 위원: 대량의 음란물이 인터넷에서 범람하는 상황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조사된 것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없다 판단하기 어려운 것 아닌지?

- 성원영 전문위원: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함.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손해배상 사건이나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감정인 감정을 하고 판사가 아닌 전문가의 의견서를 참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하지만 현실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기는 어려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시정권고 제도라고 하는 입법자의 결단이 있었던 것임.
- H 위원: 단순하게 저작물성이 있고, 피해자가 있으면 시정조치를 권고하면 될 것임.
- D 위원: 우리는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고, 시정조치를 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하여야 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작물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음.
- F 위원: 정보통신망법에 음란한 영상을 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음. 우리가 공공기관인데 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저작권법에서는 인정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음.  
한정된 행정력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얻으려면 일본 성인용 영상물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임. 만약 신고가 들어온 것 중에서 한국에서 유통되는 영상물이 있다면 이는 합법성이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처리해주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영상물이라면 우리가 음란성을 판단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음란물이 아니라고 하는 확실한 소명을 하지 않는다면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를 하면 좋겠음.

- 박성호 위원장: 위원님들간 논의는 충분히 된 것 같음. 안전번호 제 2020-80922호 웹하드에서 판매 중인 일본 성인용 영상물(AV)에 대해 시정조치 권고를 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표결함)
- 박성호 위원장: 안전번호 제2020-8092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함(가결: H 위원, K 위원 / 부결: C 위원, M 위원, A 위원, J 위원, G 위원, F 위원, N 위원, O 위원, E 위원, I 위원, P 위원, D 위원, B 위원, L 위원)
- 성원영 전문위원: 제3분과위원회(2020. 7. 9. 개최 제2020-134회 및 2020. 7. 15. 개최 제2020-141회 회의) 및 제1분과위원회(2020. 7. 13. 개최 제2020-135회 및 2020. 7. 20. 개최 제2020-143회 회의)가 전체 위원회에 부의한 안건으로, ☆☆☆ 블로그 등에서 국내 서버에 저장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direct link)를 제공한 사안임.  
 (순번 98번에 직접 접속해서 보여주면서)☆☆☆ 블로그에 직접 링크가 게시되어 있고 링크에 접속해보겠음. 링크에 접속하면 ‘☆☆☆☆☆’에 게시되어 스트리밍으로 영상을 볼 수 있음.  
 (순번 142번에 직접 접속해서 보여주면서)순번 98번과 동일하게 직접 링크를 게시하고 있으며 링크에 접속해보겠음. ‘☆☆☆☆☆’로 연결되며 스트리밍으로 영상을 제공하고 있음.  
 (순번 143번에 직접 접속해서 보여주면서) ‘○○○○○○’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된 링크 게시물이며 하나의 게시물에 다수의 직접 링크 URL주소를 게시하였음. 게시물 하단에 “\*\*\*\*\*  
 \*\*\*\*\*  
 \*\*\*\*\*  
 \*\*\*\*\*  
 \*\*\*\*\*”이라고 되어있음. 댓글도 달려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 게시된 링크에 접속해서 보여주면서)☆☆☆ 동영상으로 접속되며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제공하고 있음.

(순번 144번에 직접 접속해서 보여주면서)순번 143번과 동일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된 링크 게시물임. 해당 게시물에는 10개의 링크 정보가 기재되어 있음. 링크에 접속해보겠음.

(URL 정보에 접속해서 보여주면서)순번 143번과 동일하게 ☆☆☆동영상으로 접속되고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제공함. 애니메이션 ‘**☆☆☆☆ ☆☆☆☆☆☆☆☆☆☆☆☆☆☆☆**’은 □□□□□ □□□□□ □□□□□ □□ □□□까지 □□ □□ □□□□에서 방영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정식으로 유통되기 전임.

마지막으로 순번 145번을 확인해보겠음. 순번 145번은 순번 98번에서 제공하고 있는 직접링크를 통해 연결되는 게시물임.

게시물의 링크로 연결되는 영상 게시물이 삭제 또는 전송중단 된 후부터는 해당 링크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시정권고의 실효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삭제 또는 전송중단 하더라도 해당 불법복제물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다른 게시물의 링크들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불법복제물 자체를 삭제하거나 전송을 중단하는 것이 효과적임.

본 건처럼 불법복제물이 저장되어 있는 서버가 국내에 있거나 불법복제물을 직접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국내에 상거소를 두고 있어 보호원의 행정력이 미치는 사안에서는 링크를 제공하는 게시물에 대해 시정 조치를 권고하기 보다는 불법복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에 대해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순번 145번은 분과위원회에서 링크로 연결되는 게시물도 함께 전체 위원회에 회부하자고 결정하여 안건으로 상정하였음.

- K 위원: (이석)

- 박성호 위원장: 국내 서버에 저장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 관련해서는 1분과위원회와 3분과위원회에서 전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1분과위원회 위원님과 3분과위원회 위원님께서 관련 쟁점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람.
- N 위원: 3분과위원회에서 전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링크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명확한 것으로 생각됨. 국내에는 직접 링크 게시물이 있고 링크로 연결되는 불법저작물은 해외에 소재한 서버에 위치하고 있다면 불법저작물이 존재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권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링크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해왔음. 한편 심의대상 게시물에 게시된 링크로 접속하면 불법저작물이 국내 서버에 위치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이런 경우에는 링크 게시물에 시정권고하기 보다는 불법저작물에 대해 시정권고하는 것이 효율적이 측면에 있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3분과 위원 모두 부결 의견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처음 안건으로 상정된 사안이라서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음.
- F 위원: N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됨.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할 내용은 불법복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에 대해 시정조치를 권고할 때 링크 게시물에 대해서도 같이 시정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불법복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에 대해서만 시정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가 필요함.
- 박성호 위원장: F 위원님은 링크 정보와 국내 서버를 함께 시정조치의 권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인지?
- F 위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위치한 곳이 국내든 국외든 관계없이

링크 설정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만약 링크로 접속했을 때 불법저작물이 위치한 곳이 국내라면 해당 불법저작물에 시정조치를 권고하자는 의견임. 3분과위원회에서는 전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권고하지 말고 후자에 대해서만 시정조치를 권고하자는 의견인 것으로 생각됨.

- 박성호 위원장: 링크 설정 게시물과 국내 서버에 위치한 게시물에 대해 모두 시정조치를 권고하자는 것과 국내 서버에 위치한 게시물에 대해서만 시정조치를 권고하자는 것으로 견해가 나뉨.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람.
- D 위원: 기존 심의위원회에서는 링크와 관련해서 불법정보로 보고 링크 게시물에 대해 시정조치를 권고했음. 불법저작물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것만 시정조치를 권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함.
- 성원영 전문위원: 링크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 했던 것은 대부분 구글 클라우드나 유쿠 같은 해외에 서버가 있는 클라우드나 스트리밍 사이트였고 본 것처럼 국내 사이트에서 국내 서버로 저장된 것을 링크하여 게시한 사례는 드물었음.
- A 위원: 과거 1기 심의위원회에서 링크 게시물에 대한 심의는 거의 대부분 해외 서버에 저장된 불법저작물로 연결되는 링크 게시물이었음.  
불법저작물이 국내 서버에 저장된 것이었다면 국내 서버에 대해 시정조치를 권고했을 것임.  
2020년 들어서 불법저작물이 국내 서버에 저장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링크가 설정되어있다는 이유로 기존 1기 심의위원회 때 시정조치 권고 선례에 따라 링크 설정 게시물을 심의 요청하고 있는데 1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던 것과는 상황이 다르므로 이를 명



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전체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생각됨.

- H 위원: 저작권법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로 되어있는데 링크를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 생각할 여지는 없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고등법원 판결이 나온 후부터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보고 있음.
- H 위원: 링크로 연결되는 저작물이 불법복제물에 해당하고 링크 정보가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한다면 모두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어야하는 것이 아닌지?
- 성원영 전문위원: 지나친 행정개입으로 보일 여지가 있음.
- H 위원: F 위원님이 링크 설정자에 대해서 국내외 관계없이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불법저작물이 국내에 위치하고 있다면 해당 불법저작물에 시정조치를 권고하자는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F 위원님과 의견이 같음. 링크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은 유럽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판결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최근 일본이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링크에 대해 명확하게 조문을 잘 정리했음.  
국내법으로 보면 “불법복제물등”을 일본법에서는 정보로 봐서 해당 정보를 설정한 자, 제공한 서비스를 전부 규제대상으로 봄. 일본법 조문을 보면서 유럽과 미국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하나의 법 조문으로 만든 느낌을 받았음.  
상황에 따라 링크 설정자를 규제할 때도 있고 링크 설정자를 규제

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기준이 일관되어야 할 것임.  
기준이 있다면 원칙을 적용하는데 용이하다고 생각함.

- O 위원: 효율성 측면에서는 어떠한지?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에서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실무진 입장이라면 국내사이트에 게시되었든 해외사이트에 게시되었든 관계없이 링크가 게시되었다면 모두 모니터링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간단함. 링크가 게시된 위치와 관계없이 모두 링크로 봐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봤을 때 불법복제물의 원천을 제거하면 링크는 단순한 정보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될 것임. 효율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불법복제물만 모니터링하는 것이 타당함. 불법복제물 원천을 제거하여야 함. A 게시물의 링크를 제거한다고 해서 B, C 게시물의 링크가 제거되는 것은 아님.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나친 개입도 자제할 필요가 있음.
- A 위원: 추가적으로 배경설명을 하면 심의위원회 사무처와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팀하고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불법복제물이 해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링크를 불법 정보로 보고 시정조치 대상으로 삼고 불법복제물이 국내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국내에 불법복제물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해서 불법복제물을 발본색원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모니터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링크 게시물에 대해 국내외 서버에 불법복제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니터링해서 심의를 요청하게 됨. 안전으로 상정된 것 중 전문위원이 부결의견을 제시한 것은 국내 서버에 저장된 불법복제물임. 국내 서버에 저장된 영상물로 연결되는 링크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지 말라는 명확한 의사를 줄 필요가 있음. 명확한 의사를 줘야 해당 팀에서는 국내 서버인지 해외 서버인지 구별해서 모니터

링크를 할 것임. 그렇지 않으면 링크 설정 게시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심의 요청할 것임.

심의위원회에서 링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다면 해당 팀에서는 엄격하게 모니터링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논의가 굉장히 의미 있을 것임.

- D 위원: 불법복제물을 조사할 때 링크를 선택하면 원본저작물로 접속해서 URL정보를 바로 획득할 수 있으므로 과도하게 행정력이 많이 투입된다고 볼 수 없음.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 직원이 링크 게시물을 채증할 때 링크로 연결되는 게시물까지 함께 채증하여 제출하고 있음.
- D 위원: 불법저작물을 링크 형식으로 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에는 개인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불법저작물을 본인의 서버에 올리고 메뉴만 구성하는 방식이었는데 해당 방식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 혐의를 받았음. 그래서 외부에 서버나 클라우드 서비스에 불법저작물을 올려놓고 링크 정보만 게시함.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링크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를 회피한 것임.  
링크 게시물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 방조의 책임이 있다고 하여 다른 형태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것임. 기본적으로 저작물이 해외 서버에 있든 국내 서버에 있든 본질은 동의함.  
행정력이 추가되지 않으므로 링크 정보와 원본게시물에 대해 같이 심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지침을 주면 어떨지?
- A 위원: 위원님 말씀처럼 가이드라인을 주려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모두 부결로 처리해야 심의위원회의 의사가 전달되어 반영될 것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모두 가결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링크 게시

물에 대해 모니터링하여 심의를 요청할 것임.

- D 위원: 링크와 관련해서 가결이나 부결이나를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지침을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임.
- A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이 보호원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팀에 전달되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임. 명확하게 링크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부결해야 불법복제물이 국내 서버에 있으면 부결되는 것을 인지하여 추후 불법복제물이 국내에 있으면 원천 게시물에 대해 모니터링하여 심의를 요청할 것임.
- C 위원: 원천 게시물이 국내 서버에 위치한다면 원천에 대해서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링크 게시물은 안건으로 상정하지 말자는 건지?
- 성원영 전문위원: 위원님들이 정해주시면 지침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됨.
- C 위원: 링크가 설정되어 게시되어 있지 않으면 저작물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전혀 알 수 없음. 불법복제물을 올려놓고 링크를 게시했기 때문에 접속해서 영상물을 감상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원천 저작물만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임.
- H 위원: 링크로 연결되는 불법복제물이 국내 서버에 저장된 것에 대해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팀에 가이드를 주기 위해 부결한다고 했을 때 원천 게시물은 삭제되었지만 링크 게시물은 남아 있기 때문에 일반 이용자들이 보기에 링크는 시정조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음.
- L 위원: 기술적으로 링크는 두 종류로 분류됨.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링크라고 했는데 보통 일반링크라고 함. 일반링크는 URL주소만 주고 웹브라우저에 URL주소를 입력해서 접속해야 함.

임베디드 링크는 홈페이지에서 재생이 됨. 임베디드 링크는 저작물을 서버에서 홈페이지로 가져온 다음 보여주는 것이지만 불법복제를 하는 것임.

링크 관련된 판례를 보면 대부분 링크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되었음. 서버를 운영하면서 임베딩 시키면 서버에서 보여주는 것인데 법적으로는 따져봐야 함.

- A 위원: 법원 판결 입장은 링크의 기술적 차이를 판결 내용에 반영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음.
- H 위원: 포괄적으로 방조책임과 직접책임의 구분만 있는 것임. 모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함. 링크 게시물에 대해서도 시정권고가 필요하고 원천 게시물에 대해서도 시정권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정현순 사무처장: 배경설명을 드리자면 2016년 대법원 형사 무죄판결이 나오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링크에 대해 시정권고를 해야 하는지 격론이 있었음. 격론 끝에 내린 결론은 대법원 판결이 무죄판결이기 때문에 판결을 무시하고 시정권고를 할 수 없으나 해외에 서버를 둔 원천 게시물에 대해서는 해외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함. 만약 불법복제물이 국내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면 원천을 찾아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므로 국내 서버에 불법복제물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링크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지 말자는 의견이 모아짐. 보호원으로 심의업무가 이관되면서 희석된 면이 있음.
- 박성호 위원장: 민사방조 책임을 묻는 고등법원 판결도 있으므로 링크에 대해서 형사무죄판결과는 다르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서버자체만 시정권고 조치를 하는지 아니면 국내 서버에 불법복제물이 저장되었다고 해도 국내 서버와 링크를 함께 시정조치 권고의 대상으로 삼을지에 대해 자유롭게 표결 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표결함)

- 박성호 위원장 : 안전번호 제2020-80923호~8096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함.  
(가결: H 위원, C 위원, J 위원, F 위원, P 위원, D 위원, L 위원 / 부결: M 위원, A 위원, G 위원, N 위원, O 위원, E 위원, I 위원, B 위원)

안전번호 제2020-80970호는 만장일치로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0-80826호~80969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0-80970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o 제2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계정정지 시정권고 심의

- 박성호 위원장: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 등을 복제·전송하여 수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불법복제물 등을 복제·전송하는 경우에는 경고의 시정 조치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막기 어려움.

반복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하는 27개 온라인 서비스의 122개 계정 사용자를 상대로 일정 기간 계정을 정지하도록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고하여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을 방지하고 해당 계정 사용자가 저작권법 질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자 함.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같음하겠음. (계정 정지 시정권고 대상이 정리된 표를 제시하면서)계정명, 시정권고 횟수, 복제·전송 내용, 저작물 유형,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표로 정리되어 있음.

계정정지 대상에 대해 어떠한 기준이 충족되는지 세부적으로 확인해보겠음.

상습성, 복제·전송량, 시장대체 가능성, 유통질서를 세부 판단 기준과 구체적인 고려요소에 따라 요건별로 검토하였음.

상습성, 복제·전송량, 시장대체 가능성, 유통질서에 관한 판단기준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함.

다음으로 계정 정지 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음. 계정 정지 시정권고의 기간에 관하여는 저작권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계정 정지의 시정명령에 관해서는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그 기간을 정하고 있음.

시정명령의 최소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점과 보호원 규칙에서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계정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계정 정지 시정권고의 기간은 1개월로 하여 금번 심의 대상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2항은 계정 정지의 시정명령 대상인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은 “이메일 전용 계정은 제외하며, 해당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메일 전용 계정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원에서 포털사이트 계정은 계정정지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고 웹하드 계정에 대해서만 계정정지 시정권고 심의를 요청하였음.

중앙전파관리소에서 PC버전과 모바일버전의 웹하드를 구분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보호원에서도 별도로 보고 있음. 모바일 웹하드는 모바일에서 볼 수 있도록 해상도를 최적화하기 위해 인코딩해서 별도 서버에 저장하게 됨.

동일 계정에 대해 PC버전과 모바일버전 웹하드에 계정정지를 하게 되면 하나의 ID로 PC버전과 모바일버전 웹하드에 모두 접속할 수 있어 중복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계정정지 시정권고 공문이 발송될 수 있음.

중복으로 공문이 발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웹하드 계정 44개는 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계정정지 권고 심의안건 세부내역을 보여주면서)안건번호 제2020-1호 계정을 보면 불법복제물 등의 공표(출시)일 5년 이내로 확인됨. 2015. 1. 1. 이후에 출시된 불법복제물이 488건이며 모두 데드카피임. 웹하드에서 불법복제물이 100개가 올라와서 시정권고하게 되면 시정권고 100회가 되어서 계정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정권고 경고 내역을 확인하면서)일주일내 여러 차례의 시정권고를 받더라도 1차 경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여 시정권고 받은 회수는 경고 횟수보다 많음.

제2020-2호~78호에 대한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람.



- 박성호 위원장: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계정정지 시정권고 심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 E 위원: 계정정지 시정권고가 가결되어 계정이 1개월 정지되고 정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해당 업로더가 불법복제물을 다시 게시하면 계정정지 대상 선정 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일정기간을 기다려야 하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헤비업로더는 웹하드에 여러 개의 아이디를 생성해서 불법복제물을 올리기 때문에 계정정지에 대한 실효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됨.
- E 위원: 만약 동일 계정이 다시 계정정지 대상이 되면 과거 경고의 시정권고 건수를 포함하는지 아니면 계정정지되면 경고의 시정권고 건수는 초기화되어 다시 카운트되는 건지?
- 성원영 전문위원: 계정정지되면 초기화되고 계정정지 이후부터 다시 경고 건수가 카운트됨.
- H 위원: 헤비업로더에 대해 형사처벌도 되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헤비업로더의 경우 특별사법경찰에게 수사의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수사의뢰를 요청하지는 않음.

- C 위원: 계정정지 대상이 모두 웹하드 사이트의 계정들인데 네이버나 카카오의 계정이 계정정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에 네이버나 카카오의 계정에 대해 계정정지 시정권고 심의를 요청한 적이 없음. 계정정지 대상에 포털사이트가 없는 이유는 커뮤니티 활동이나 밴드에 연동해서 로그인할 수 있고 이메일 계정도 있기 때문에 포털사이트에 대한 계정정지는 하지 않고 있음.
- C 위원: 포털사이트는 이메일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계정정지를 하기 어렵다고 들었음. 이메일 연동 부분도 계정정지를 하기 어려운 하나의 이유가 될 것으로 생각됨.
- 성원영 전문위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견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술적으로 이메일은 사용하고 업로드 기능만 하지 못하도록 계정을 정지하는 것이 어려운 지는 확인되지 않았음.
- 참석 위원 전원: (표결함)
- 박성호 위원장 : 만장일치로 10개의 온라인서비스의 44개 계정은 중복 청구되었으므로 부결하고 그 외 17개의 온라인서비스의 78개 계정은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므로 1개월의 계정정지를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계정정지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중복 청구된 44개 계정은 부결하고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78개 계정에 대해 17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1개월의 계정정지를 시정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5. 논의안건

### 0 구글 앱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바일 앱의 저작권 침해 여부

- 박성호 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금번 논의안건은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22조의6 제1항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무료 음악 모바일 앱의 불법성 판단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위원장이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여 분과위원회 심의 없이 부의한 안건임. 보호원에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에 보내온 공문에는 4개의 모바일 앱의 URL이 특정되어 있음. 보호원은 온라인대응국 온라인대응팀의 조사 자료와 이를 바탕으로 한 보호기반국 조사연구팀의 법률 검토의견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에 제출함.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음. 논의 대상인 4개의 모바일 앱을 먼저 보시고 난 후 검토보고를 드리겠음.
- 성원영 전문위원: ( ‘○○○○○○○○○○’ 앱에 접속해서 보여주면서)해당 앱에서 지코의 ‘아무노래’ 를 검색해보겠음.  
(검색된 노래를 재생하기 위해 재생버튼을 누름)

‘○○○○○○○○○○○○’ 앱의 경우는 유튜브 영상이나 최신 음원은 대부분 재생되지 않음. “유튜브로 이 곡을 재생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뜬. 전문위원이 해당 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유튜브를 이용하여 재생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음. 유튜브에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음원소스를 가져와서 제공하고 있거나 프레임링 링크(framing link) 일 가능성이 큼. 해당 앱 제작사는 ◆◇ ◆◇◆◇◆에 본사를 두고 있음. 팝송을 검색해보겠음. (앤마리(Anne-Marie)의 ‘2002’ 를 검색하여 재생함) 해당 앱 내에는 국내 음악 저작물보다는 해외 음악 저작물이 더 많음.

( ‘★☆☆’ 앱에 직접 접속하면서) 두 번째 앱인 ‘★☆☆’ 를 시연해보겠음. 해당 앱은 ♠♥♠♥♠♥ ♠♥♠에서 만들 것으로 추정됨. 광고가 게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지코의 ‘아무노래’ 를 검색하여 재생해보겠음. ‘◆♣◆♣◆♣◆♣’ 사이트는 불법사이트로 추정됨. 해당 사이트는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이거나 프레임링 링크(framing link) 일 가능성이 큼.

( ‘★☆☆’ 앱에 게시된 지코의 ‘아무노래’ 를 재생함)  
앤마리(Anne-Marie)의 ‘2002’ 를 검색해서 재생해보겠음.

- L 위원: 파일로도 다운되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가능함.

( ‘★☆☆’ 앱에 게시된 앤마리(Anne-Marie)의 ‘2002’ 를 재생함)

( ‘△△△△△’ 앱에 직접 접속하면서) 세 번째 앱인 ‘△△△△△’ 를 시연해보겠음.

- C 위원: 조금전 시연한 ‘★☆☆’ 앱도 유튜브에서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음원소스를 가져와서 제공하는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그렇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할 때 설명 드리겠음. 지코의 ‘아무노래’ 검색하여 재생해보겠음.

(‘△△△△△’ 앱에 게시된 지코의 ‘아무노래’ 를 재생함)다수의 앱 이용자가 지코의 ‘아무노래’ 를 게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해당 앱은 □■□■ 제작사가 만들어 서비스하고 있음. 해당 앱은 ㉠㉠의 글로벌 음악 유통 플랫폼인 ‘◎●◎●◎●◎●◎●’ 사이트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이용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앱에 직접 접속하면서)마지막 앱인 ‘◇●◇●◇●’ 을 시연해보겠음. △▽△▽ 제작사가 만든 앱으로 보이며, 해당 앱은 링크 방식이 아닌 자체 서버에 저장된 음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지코의 ‘아무노래’ 검색하여 재생해보겠음.

(‘◇●◇●◇●’ 앱에 게시된 지코의 ‘아무노래’ 를 검색하여 재생함)다수의 광고가 게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음원을 다운로드할 수 있음. 이상 시연을 마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먼저 ‘○●○●’ 사건이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4. 10.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조치 요청에 따라 ‘■■■■■■■■■■■■■■’ 사이트가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 목적의 사이트라는 이유로 접속을 차단했음. 해당 사이트는 게시판이 없는 검색형 사이트임.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이 비례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하라고 하면서, “이 사건 웹사이트 내에 존재하는 개별

정보 전체가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웹사이트는 파일 공유 서비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토앨범을 만들 수 있는 기능 및 블로그 기능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 게시물 중 위법한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게시물 작성자가 웹사이트 운영자와 동일인이거나 그 하부기관이 아닌 점, 웹사이트 내 정보 대부분이 위법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한 바 있음.

그렇다면 특정 모바일 앱(mobile app)을 통해 상당량의 불법복제물이 유통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앱 전체를 불법정보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임.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특정 앱 전체에 대한 삭제 요청은 개별 정보의 삭제나 그 게시자에 대한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과 달리 해당 앱에 존재하는 적법한 다른 정보의 유통까지 제한하고 위법한 정보를 게시한 이용자뿐 아니라 해당 앱을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참고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1984년의 미국 ‘Sony 사건’ 또는 ‘Betamax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저작권의 비침해적인 사용에 제공될 수 있는 물건에 대하여는 저작권에 관한 기여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 위 사건의 1심 법원은 “Whatever the future percentage of legal versus illegal home-use recording might be, an injunction which seeks to deprive the public of the very tool or article of commerce capable of some noninfringing use would be an extremely harsh remedy, as well as one unprecedented in copyright law.” 라고 하였는데, 이는 ‘●◆●

◆’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의 시각과 매우 유사함. 한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한 ‘Grokster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Sony 판결의 의의를 긍정하면서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유발(inducement)한 때에는 Sony 판결이 제시한 원칙의 검토에 들어갈 필요 없이 곧바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 검토보고서 407쪽 각주 25번을 보시면, 2심 판결은 “Grokster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피고들의 네트워크상에서 이용될 수 있는 파일의 90% 정도가 저작권침해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시스템이 나머지 10% 정도의 적법파일 교환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당한 비침해적 용도(substantial noninfringing uses)에 사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음.” 라고 판단함.

요컨대 모바일 앱의 체계, 게시물의 내용 및 게시물 중 위법한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후에서야 해당 앱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 앱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음. ‘○○○○○○○○○○○○○○○○○○○○’ 앱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소재 ‘○○◇○○◇○○◇○○◇○○ ◇○○◇’가 개발하여 전 세계 3억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음. 참고로 ▼▼▼▼, ▼, ▼▼, ▼▼▼▼ 등 국내 유수의 기업이 ‘○○◇○○◇○○◇○○◇○○ ◇○○◇’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협업 관계에 있음. 검토보고서 408쪽 각주 27번을 보시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조선일보에서 기사화되었음.

우선 ‘○○◇○○◇○○◇○○◇○○ ◇○○◇’와 유튜브 및 국내외 권리자 단체와 사이의 계약관계에 관해서는 조사된 바가 없음. 전문위원이 해당 앱을 설치 및 이용한 결과 ‘○○○○○○○○○○○○○○○○○○○○’ 앱은 프레임 링크(framing link)를 통해 유튜브의 음악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단, 제출된 자료에는 기술적인 부분이 조사되어 있지 않음. 해당 앱을 설치할 때 “youtube로 재생”에 동의를 하여야 함. 일부 국내 최신 음악저작물, 예를 들어 싸쓰리의 ‘여름 이야기’를 검색하면 “youtube로 이 곡을 재생할 수 없습니다”는 문구가 나옴. ‘○○○○○○○○○○○○○○○○○○○○’ 앱 이용자가 콘텐츠를 재생하면 유튜브 게시물의 조회수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임. 이 경우 유튜브의 Content ID 정책에 따라 저작권자 등에게 수익이 배분됨. 유튜브의 수익배분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저작권자 등 권리자들은 유튜브에게 전송중단을 요구할 수 있음. 즉 유튜브의 Content ID 정책은 사전 이용허락뿐만 아니라 사후 이용허락, 즉 추인을 전제로 하고 있음. 참고로 우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프레이밍 링크로 유튜브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저작권자 등의 이용허락이 있다고 보아 시정권고를 부결하고 있음.

한편 보호원 조사연구팀이 제출한 오승종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서는 저작재산권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사이의 이용허락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법률검토의견서는 “유튜브 API를 음원소스로 하여 서비스를 무단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음. 또한 조회수 미산정의 경우에는 계약위반 책임을 진다고 설명하고 있음. 즉 오승종 변호사가 ‘○○○○○○○○○○○○○○○○○○○○’ 앱이 저작권 침해(방조)에 해당한다’고 검토한 것은 아님.

‘○○○○○○○○○○○○○○○○○○○○’ 앱은 무료 음악 제공 서비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인식 기능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 앱 또는 해당 앱을 통해 제공되는 유튜브 콘텐츠 작성자가 ‘○◇○◇○◇○◇○ ○◇○◇’와 동일인이거나 그 하부기관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 앱이





참고로 ‘●○●○’ 사건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4. 5.경 가온 차트 2014년 상반기 TOP 100 순위에 오른 총 601곡의 음원을 표본으로 하여 ‘●◆●◆’ 사이트의 자료를 검색한 결과 2,099건의 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적발한 다음, 위 2,099건의 음악파일 중 실제로 전송, 실행되는 2,003건의 음악파일을 불법정보로 보아 저작물침해비율을 95.4%로 산정했었음.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위와 같이 산정한 저작물침해비율을 전체 웹사이트 게시물 중 저작권위반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 앱이 프레이밍 링크 방식으로 제공하는 음악저작물 중 일부는 합법 저작물로 보임. ‘☆☆☆’ 앱이 제공하는 전체 음악저작물 중 불법복제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구글에 대한 해당 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요청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여기서 ‘요청’이라고 표현을 쓴 이유는 이것은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구글 코리아가 협의를 하여 협조를 구하기 위함임. 행정조치, 행정처분, 행정지도 등을 위하여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는 의미임. 검토보고서 414쪽에 ‘☆☆☆’ 앱 관련 자료가 조사되어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다음으로 ‘△△△△△’ 앱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음. ‘△△△△△’ 앱은 독일 글로벌 음악 유통 플랫폼인 ‘○○○○○○○○○○○○○○’ 사이트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이용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는 약 1억명이 넘는 이용자가 가입하고 있고, 미국 저작권법 등 각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누구든지 사이트상의 불법복제물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에 따른 take down 정책을 취하고 있음.

‘○○○○○○○○○○○○’에서 제공하는 음악저작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설령 불법복제물이 제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복제물이 ‘△△△△△’ 앱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해당 앱이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방조하는 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검토보고서 416쪽에는 ‘△△△△△’ 앱 관련 자료가 조사되어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마지막으로 ‘■■■■■■■’ 앱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음. ‘■■■■■■■■■’ 앱은 링크 방식이 아니라 자체 서버에 저장된 음원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해당 앱은 복제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다만 ‘■■■■■■■■■’ 앱이 제공하는 전체 음악저작물 중 불법복제물이 차지하는 비중에 관한 조사를 마친 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구글에 대한 해당 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이상 4개의 앱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렸음. 어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모바일 앱에서 프레이밍 링크 등의 방법으로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러한 앱 전체가 당연히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것은 아님. 모바일 앱의 제작 의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게시물 작성자의 관계, 앱의 체계, 게시물의 내용 및 게시물 중 위법한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후에서야 그러한 앱이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이상으로 논의안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A 위원: 오늘 소개한 앱은 이용자가 많은 순서대로 임의로 선정한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에서 상위권부터 선정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이미 법률검토를 받았거나 합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앱이 선정이 된 것임.
- A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논의를 요청한 것은 이른바 ‘리치앱(leech app)’이라고 하는 것임. 리치사이트 기능을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하는 것인데, 아마 오늘 소개되지 않은 하위랭크에 속하는 상당수의 앱은 리치앱에 해당될 여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그런 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구글에 삭제를 위해 협조 요청해야하는 앱이 상당 수 존재할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보호원에서 리치앱에 해당할만한 앱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할 여건이 되는지 조금 우려됨.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A 위원: 올해 5월에 일본 저작권법 개정된 것을 보면 제113조제3항에 리치앱에 대해 저작권 침해 의제 조항이 만들어졌음. 우리의 경우에도 리치앱에 해당하는 사안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조사한 후 문화체육관광부 쪽에 리치앱에 대해서 구글에 협조 공문을 보낼 필요가 있겠다고 의견을 주면 될 것 같음.
- D 위원: 리치앱이라는 것이 일본용어인지?
- A 위원: 리치프로그램, 리치앱프로그램, 리치앱소프트웨어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보임.

- C 위원: 일본 저작권법에 송신범이라고 표현하고 있음.
- D 위원: 리치가 reach의 의미인지?
- A 위원: 거머리의 leech임. 불법 콘텐츠의 링크를 제공한다는 의미임.
- D 위원: 링크 정보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그런 앱이나 사이트를 리치사이트라고 하고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일본 판례가 나왔고, 최근에 입법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으로 이해됨.
- L 위원: 애플에서 검색되는 앱이 있는데, 애플은 애플뮤직을 가지고 있어 저작권법을 준수하여 운영함. □□□□□□ 같은 경우도 모든 주소가 애플 아니면 유튜브로 연결되어 저작권 침해에 대해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음.
- A 위원: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랭크에 있는 것들은 합법적인 앱일 가능성이 높으나, 하위랭크에 리치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가 필요함.
- L 위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콘텐츠 등을 필터링 하게 한 것처럼 하위랭크에 위치한 앱 제작자들에게 필터링을 권할 수 있지만 불법 영상물이나 음악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앱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A 위원: 리치앱은 앱에서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의 대부분을 불법정

보로 연결해주는 앱이라는 의미임. 음악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앱 전부에 대해서 삭제하겠다는 취지가 아님. 리치앱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리치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음.

- I 위원: 보호원에서 앱을 잘못 선택한 것으로 보임. 시정권고 심의에서 의결한 것과 비슷한 건임. 원 불법복제물이 있으면 링크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말과 상통하는 의미인데, 샘플링이 잘못된 것 같음.
- N 위원: 4개의 앱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해서 요청한 것인지?
- 정현순 사무처장: 그렇지 않음. 구글 검색결과 제한처럼 구글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의하는 연장선상에서, 구글 앱스토어에 리치앱이라고 분리될 수 있을 정도의 앱이 있다면 문체부, 보호원, 구글이 협력해서 리치앱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며, 보호정책집행을 위해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논의 안건으로 올린 것임. 급하게 요청한 점도 있고 대표적인 앱을 찾아보니 샘플이 부적절한 면이 있음.
- A 위원: 오늘은 원론적인 부분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음. 실태조사를 해서 리치앱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구글에 해당 앱에 대해 삭제해달라고 협조 요청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정현순 사무처장: 그렇다면 리치앱으로 보기 위한 요건을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A 위원: 예컨대 해당 앱에서 제공하고 있는 음원 등이 전부 불법이어야 할 것임.
- C 위원: 불법성의 비율 등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음.
- B 위원: 저는 다른 생각임. ◇◇◇◇◇◇◇라는 앱이 있음. 해당 앱이 구글플레이에서는 검색이 안 되고 원스토어에서 검색되어 다운로드 할 수 있음. 유튜브가 임베디드로 그대로 사용이 됨. 그런데 특정 음원을 재생시키는 동안에는 유튜브의 해당되는 영상과 음원을 해상도별로 또는 유형별(mp3, mkv 등)로 다운을 받을 수 있게 해놓았음. 유튜브는 원칙적으로 다운로드를 허용하지 않음. 오프라인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은 유료서비스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유튜브의 정책에 반해서 유료앱을 운영하고 있음.
- A 위원: 그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앱은 합법적인 음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 B 위원: 100% 합법적인 음원임. 유튜브 음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임.
- 성원영 전문위원: 스트리밍으로 제공하거나 다운로드 기능을 막아놨다고 하더라도 복제·전송된다는 측면에선 동일함. 그렇다면 해당 앱에서 유튜브 음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이용허락 계약위반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음.

- B 위원: 그래서 ○×○×○라는 앱을 구글에서 삭제함.
- A 위원: 리치앱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것임. 100% 불법정보인 경우가 전제가 되는 것 같음.
- N 위원: 그렇다면 리치앱 운영자가 규제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 한 곡만 적법한 것을 심어놨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 A 위원: 여기서 말하는 100%는 늘 100%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90~100% 불법정보가 운영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필터링 기능을 포함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임. 불법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기능까지 결합되어 함께 운영이 된다면 리치앱에 해당되지 않음. 기술적 보호조치가 결합돼서 운영이 되는지 여부와 불법정보 운영 비율을 연동한다면 리치앱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일종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 I 위원: 결국 링크사이트 판단과 같이 해야 할 것임. 이때까지 심의 위원회는 개별 링크만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했음. 링크사이트가 대부분 불법링크를 제공하고, 일부만 적법이 있을 때 전체 사이트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이트 전체를 정지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일정한 공식으로 말하긴 힘들 것임. 리치앱도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정현순 사무처장: 리치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차단 심의를 할 때 전체 게시물의 70%가 불법복제물이면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 접속차단했었음. 문제는 ●◆●◆닷컴 사이트의



경우처럼 앱은 전체 분모가 나오지 않음. 검색을 했을 때 전체 게시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법복제물이 전체의 몇 %를 차지하는지가 나오지 않음. 그래서 행정법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닷컴 사건에서 결국 패소한 것임. 과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앱에 대해서 규제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필요한 것임.

- A 위원: 앱에 대해 필터링 기능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가 결합이 되어있는지 여부와 필터링 기능의 효율성까지 고려되어야 할 것임.
- D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성원영 전문위원: 또 다른 문제가 있음. 오늘 살펴본 4개 앱 중 3개가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인데 해외 권리자단체와 어떤 계약관계가 있고 국내 신탁단체 등과 정산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A 위원: 그렇다면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 아닐 것 같음. 리치 앱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임.
- D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의 의중은 무엇인지?
- P 위원: 뭔가 액션을 취하겠다는 것 아닌지?
- 정현순 사무처장: 권리자 단체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민원 해소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임.

- I 위원: 저는 앱이라는 것이 자기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원천이 되는 소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콘텐츠를 살필 것이 없다고 생각함. 원천이 되는 소스가 이미 구글에서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 받았을 것으로 예상됨. 앱에서는 큰 몇 가지의 소스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소스별로 판단을 하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임. 불법인 소스를 원천으로 삼았다면 이미 소스에 대한 판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따르면 될 것임.
  
- 정현순 사무처장: 주로 사용하는 음원소스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대상을 선별하자는 말씀이신지?
  
- 성원영 전문위원: 앱을 삭제하기보다는 원천이 되는 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함. 앱은 링크와 마찬가지로 껍데기를 덮어씌운 것에 불과한 것임. 이것을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라고 보기에선 위험하지 않나 생각됨.
  
- N 위원: 그 의견이 당연한 것이긴 하나, 원천을 찾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름길을 찾으려는 의도로 보임.
  
- A 위원: 앱 자체가 허브 역할을 하는 것임. 앱을 없애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것과는 양상이 또 다른 것으로 보임. 그래서 조금 더 문제의식을 가진 것으로 생각됨.

- I 위원: ●●●●●●도 앱이 올라와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에서 기술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검토하기로는 불법이라고 함.
- I 위원: 애플의 앱스토어에도 올라와 있음. 원천소스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면 나머지는 비교적 쉽게 해결되지 않는지?
- 정현순 사무처장: 보호원이 샘플링한 4개의 앱들은 논의 대상으로 삼기에 조금 부적절하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의견들을 종합해서 가장 부합하는 앱을 선별해서 구체적으로 심의를 상정하는 것은 어떨지?
- H 위원: 리치앱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했으므로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결론짓는 것이 타당해 보임.
- 참석 위원 전원: 찬성함.
- 박성호 위원장: 만장일치로 향후 더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함.

## 6. 폐회 선언

- o 박성호 위원장이 제152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152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10. 19.

위원장 박성호

위원 권헌영

위원 김경숙

위원 김연희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백대용

위원 신창환

위원 심장섭

위원 오영주

위원 위정현

위원 윤종수

위원 이성엽

위원 최승수

위원 최현용

위원 홍지만